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31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3. 8. 14.
4. 회부일자 : 2023. 8. 21.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등 추진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1.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로 수정(안 제12조의2)
2.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관장’을 ‘원장’으로, ‘분관’을 ‘분원’으로 수정함(안 제12조의2 ~ 제12조의5, 별표1)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3. 협의 :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4.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3. 7. 20. ~ 7. 29.)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통보 확인서(별첨 3)
 - 학생인권영향평가 : 검토 의견서(별첨 4)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1231호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자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¹⁾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²⁾ 및 과 동 조례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이하 ‘과학전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과학전시관이 학생들의 과학교육과 교원의 과학연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명칭이 주요업무와 달라 업무추진의 불편과 이용자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변경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³⁾

1)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명칭 변경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9369,(2023.6.23.)

[표-1] 과학전시관 현황 및 기관명칭 변천 사항

▶ 현황

(2023. 4. 기준)

| 기관명 | 개원일자 | 위치 | 조직 | 직원 현황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 1989. 10. 3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101 | ○ 본원(3부 2과) ○ 3개 분관 | ○ 현원 98명 |

▶ 과학전시관 기관명칭 변천 현황

- 1) 1989년 '서울과학교육원'개원
- 2) 1995년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으로 변경
- 3) 1999년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으로 기구통합
- 4) 2004년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으로 변경(현 위치 이전)
- 5) 201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으로 변경

○ 2004년 현재 위치(관악구)로 이전한 과학전시관 부지는 당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1997.9.10.)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⁴⁾」(1993.12.30.)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전시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과학전시관'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시 해당 규칙은 개정⁵⁾(2005.12.30.,전부개정)을 거치면

4) 현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법제명이 바뀌었음.

[별표 1] 공원시설의 종류

5. 교양시설: 도서관, 독서실, 기원, 온실, 야외극장, 전시관, 문화회관,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 시설에 한한다),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와 고분, 성터, 고옥 기타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어린이교통 안전교육장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공원시설의 종류

5. 교양시설: 도서관 및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및 과학관, 장애인복지관,사회

서 ‘과학관’을 공원시설의 종류에 포함시켰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⁶⁾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학관’은 그 성격을 유지하는 시설일 경우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는 관악구청의 유권해석(관악구청 공원녹지과-9395.,2023.4.17.)이 있었으며,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건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사항이 아닌 건물 이용에 관한 사항⁷⁾인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부지에 설립되어 있는 과학전시관은 법률상 명칭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과학전시관 내부 직원과 외부인을 상대로 한 기관 명칭 변경 공모⁸⁾와 기관 명칭 변경 자문위원회⁹⁾ 등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으로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와 옛무덤, 성터, 옛집, 민속놀이마당 및 정원, 그 밖의 도시민의 교양 함양을 위한 시설

-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8) ‘과학전시관 기관 명칭 변경 공모’, 2023.2.21.~3.12.

▶ 설문공모 결과

| | 변경 예정 기관명 | 외부 (국민생각함) | | 내부 직원(설문) | |
|-----|-----------------|------------|-------|-----------|-------|
| | | 참여자수(명) | 비율(%) | 참여자수(명) | 비율(%) |
| 1 | 서울시교육청과학교육원 | 105 | 50.2 | 25 | 25.5 |
| 2 | 서울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 41 | 19.6 | 37 | 37.8 |
| 3 | 서울시교육청미래융합과학교육원 | 39 | 18.7 | 17 | 17.3 |
| 4 | 기 타 | 24 | 11.5 | 19 | 19.4 |
| 합 계 | | 209 | 100 | 98 | 100 |

- 9) ‘과학전시관 기관 명칭 변경 자문위원회 회의’,2023.4.6. 서울시교육청과학전시관 3층 관장실, 참석자 11명

- 이처럼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교육감이 법령¹⁰⁾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조직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인바¹¹⁾, 동 개정조례안은 법적·절차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욱이 타 시도의 경우 과학전시관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직속기관의 명칭을 ‘과학교육원’, ‘창의융합교육원’ 등 해당 기관의 목적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명으로 변경·사용하고 있는바,

과학전시관의 기관 명칭 변경은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게 기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타시도 기관명칭 현황

| 시·도 명 | 기관 명칭 | 비고 |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 3년전 변경 |
| 대구광역시 | 대구창의융합교육원 | |
| 경기도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 |
| 전라남도 |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 |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 |
| 충청남도 |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 |
| 경상남도 |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 |
|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 |
| 대전광역시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 |
| 충청북도 | 충북자연과학교육원 | |
| 울산광역시 | 울산과학관 | |
| 경상북도 |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 |
| 강원도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 |
| 제주특별시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 2023.3월 변경 |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1) 지방의회는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구 설치권한과 조직편성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직접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폐지하거나 교육감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기구의 축소, 통폐합, 정원 감축의 권한을 가진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등 참조).

○ 한편 안 제12조의2제1항은 과학전시관의 설치 근거 법령을 「과학 교육진흥법」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법이 2017년 10월 24일 전부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약 5년이 지난 후에야 금번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반영하였는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